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의료폐기물 관리요령



인천광역시 서구청

| Index

1.의료폐기물의 종류

2.의료폐기물 관리요령

3.자주 묻는 질문

1. 의료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 분류

구분		내용(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격리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
위해의료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의료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최근 법개정에 따른 분류 시 주의사항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
이에 따라, 보관방법(4도 이하 보관) 등을 준수하여야 함

1. 의료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 종류 주요 사례

-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는 일반의료폐기물(고상)으로, 체액·분비물·배설물만 있는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액상)으로 처리
- ✓ 일반의료폐기물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진료,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생리대
 - 노인요양시설에서 진찰·치료·시험·검사 등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 치과,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등에서 석션기를 통해 코나 입에서 배출되는 분비물 및 튜브
 -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외부충격에도 캡이 분리되지 않아 손상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
 - 혈액 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석고, 캐스트, 스프린트
 - 치과에서 발생하는 피, 고름, 분비물 등이 묻어있는 아말감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

종류별 전용용기 구분

폐기물 종류	전용용기	비고
격리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치아 제외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의 폐기물		
그 밖의 의료폐기물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담아 배출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

전용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 (1)

- ✓ 전용용기는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의 용기를 사용(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
 - 병원 관계자는 전용용기 구매 시 검사결과서를 요구하여 검사결과서를 확인
- ✓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 금지
- ✓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 종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
 - 다만, 대형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개별포장 가능
- ✓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은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처리
- ✓ 골판지류 용기의 내부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

전용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 (2)

✓ 전용용기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폐기물 종류	도형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및 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	검정색
	상자형	노란색
재활용 태반	녹색	

※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과 노란색,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혼합 보관할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방법

전용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 (3)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자	

- ✓ 사용개시 연월일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최초로 넣은 날을 기재
다만,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기재할 수 있음
- ✓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 기재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적정관리 사례



표기사항 미기재



표기사항 전부 기재



(원급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원급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출자	OO의원	종류 및 성질의 상세	위생의료
작성일자	2017.2.7.	수거자	OOO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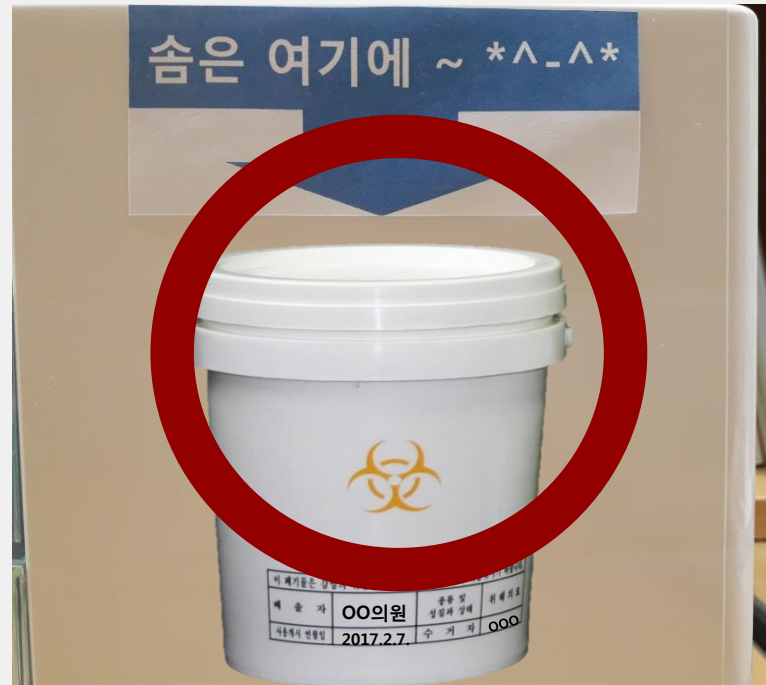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적정관리 사례



전용용기 미사용



전용용기 사용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의료폐기물 종류	보관기간	비고
격리의료폐기물	7일	
조직물류폐기물	15일	치아 제외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손상성폐기물	30일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	60일	

※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은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보관방법

✓ 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

-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 그 밖의 의료폐기물: 밀폐된 전용의 보관시설에 보관

✓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 기관

: 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국가나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소, 장례식장,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 군부대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세부기준

- ✓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
- ✓ 소독약품·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부착,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 가동
-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 ※약물소독의 종류
 - : 석탄산수(석탄산 3%), 크레졸수(크레졸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그 밖의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
-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
- ✓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법적서식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 보관량: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 시 주의사항 - 보관 시: - 운반 시:	
	⑥ 운반장소:	

-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 ✓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cm 이상 X 세로 40cm 이상 (냉장시설은 가로 30cm 이상 X 세로 20cm 이상)
- ✓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예시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	
	① 폐기물 종류 - 격리의료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② 총 보관량 <div style="text-align: right;">10 kg</div> <div style="text-align: right;">10 kg</div> <div style="text-align: right;">20 kg</div>
	③ 보관기간 - 격리의료폐기물: 7일 - 손상성폐기물: 30일 -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15일	④ 관리책임자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5em;">박보검</div>
	⑤ 취급 시 주의사항 - 보관 시: 전용용기 밀폐포장, 종류별 분류, 용기 중량 기록, 격리의료폐기물 및 조직물류폐기물은 냉장보관 - 운반 시: 흘날림 방지, 밀폐포장, 감염주의	
	⑥ 운반(처리) 예정 장소 - 운반자: 0000 (상호기재) - 처리자: 0000 (상호기재)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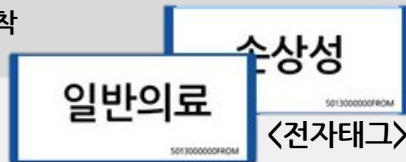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전경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위반 사례

의료폐기물 주요 위반 사례

- ✓ 전용용기 미사용
 - 옮겨 담을 수 없음
 - 진료가 끝난 즉시 전용용기에 보관
- ✓ 보관용기 재사용
- ✓ 보관용기에 사용개시일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용
- ✓ 보관표지 미부착
- ✓ 보관표지 내용 미기재
- ✓ 전자태그 미부착



※ 보관창고(장소) 입고 전까지 폐기물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함

의료폐기물 위반 사례별 처벌기준

- ✓ 환경오염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관기준 위반
 - 보관기간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미사용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RFID 사용의무 위반
 -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처리증명 변경

✓ 의료폐기물 종목 추가

예시) 조직물류폐기물이 새로이 발생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단, 대표자 변경은 변경대상이 아님

✓ 확인 받은 의료폐기물 월평균 배출량이 30% 이상 증가 (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 기준)

✓ 폐기물 처리자, 처리방법의 변경

2. 의료폐기물의 관리요령

의료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

(앞쪽)

(2016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배출자용)

문서번호 _____ 시행일 _____
 수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신: (업소명) **도개비병원** (대표자) **공유** **공유**

① 업소명	도개비병원	② 소재지	분류번호	인천광역시 서구로 307(삼곡동)						
③ 대표자	공유	④ 전화번호	032-000-0000	⑤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⑥ 배출시설	1. 대기 중 2. 수질 중	⑦ 업종	(2의 기타 조건업) 86909-09							
⑧ 공단		⑨ 주 생산품		⑩ 종업원 수	명					
⑪ 제품제조공정										
⑫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_____ 호 2. 신고일: _____ 3. 관리번호 제 16-04-00 호 4. 확인일: 2016. 01. 01.									
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보유현황										
1. 시설명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년)					
		계	지정	일반	계	지정	일반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매립시설	()	설치승인면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해당 연도)					
		m ²		m ²	m ³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 종류 (분류번호)	2. 총 발생량 (톤/년)	3. 성질 · 상태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			6. 보관량 (톤/년)		7. 처리 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년)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톤/년)	이월 보관량	
과적물류폐기물 (10-12-01)	0.5	역상			일발소각	2	1주1도개비	0.5		
병리폐기물 (10-12-02)	0.3	고상			일발소각	2	1주1도개비	0.5		
(- -)										
(- -)										
(- -)										

3. 자주 묻는 질문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

Q. 격리의료폐기물, 탈지면 등 일반의료폐기물과 생물화학, 병리계 등 위해의료폐기물의 혼합 보관 가능 여부?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중 봉투형,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폐기물과 합성수지 용기에 보관하는 폐기물을 구분하여 혼합 보관 가능

✓ 다만, 격리의료폐기물이 위해의료폐기물 또는 일반의료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도형은 붉은색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보관기일은 격리의료폐기물의 보관기일(7일)을 따라야 함

3. 자주 묻는 질문

봉투형 용기 사용방법

Q.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를 위해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처리하는 경우, 사용개시 연월일의 기준은?

- ✓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봉투형 용기를 상자형 용기에 최초로 담은 날을 기재할 수 있음

예시) 봉투형 용기에 일반의료폐기물을 '16.11.1.부터 보관하여 사용하고 상자형 용기에 '16.11.10.에 다시 담았을 경우 상자형 용기의 사용개시 연월일은 '16.11.10.

3. 자주 묻는 질문

링겔병의 분류

Q. 병원에서 사용하고 난 수액공병(링겔병) 및 앰플공병 등은 사업장폐기물인지? 아니면 의료폐기물 또는 다른 폐기물로 분류되는지?

- ✓ 분리가 가능한 수액세트 중 주사바늘과 연결된 줄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
- ✓ 수액백 및 링겔병이 줄 등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
- ✓ 항암제, 백신 등을 투여하는데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

※ 수액백 및 링겔병 등이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3. 자주 묻는 질문

기타 질의회신 사례

의료폐기물인 경우

- ✓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피, 고름은 조직물류폐기물
- ✓ 시험관, 칼날, 한방침 등 1회용 이외는 자체 소독 등으로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 버릴 때는 의료폐기물 처리
-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적용 받는 세탁물(침구류, 의류 등)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오염된 물품(수술용장갑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 후 폐기하는 경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 ✓ 병·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치아는 조직물류폐기물, 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
- ✓ 의료행위 시 발생된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예외
 -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명시 필요

3. 자주 묻는 질문

기타 질의회신 사례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

- ✓ 치아 치료 후 환자의 치아 세척수, 의료기기 세척수
- ✓ 재택환자로부터 발생하는 탈지면, 손상성 폐기물 등
- ✓ 진료, 치료, 투약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이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
- ✓ 동물병원에서 미용을 위해 깎은 동물의 털, 손·발톱,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드, 휴지 등

Made by.

**인천광역시 서구청
폐기물관리팀**

Copyright 2017. 인천광역시 서구청 폐기물관리팀 all rights reserved.